

1. 개정이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 및 호스피스의 신청 등 호스피스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6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4. 6.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맞게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신청서에 관한 서식을 신설하고 현행 이용동의서의 제출서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탄력적 인력 운영을 위해 [별표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의 인력기준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22조 내지 안 제22조의3 및 별지 제20호 서식)

-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병상이용 대기 현황 파악 곤란 및 이용자의 대기 발생 문제 개선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66호, 2023. 6. 13. 일부개정, 2024. 6. 14. 시행)됨에 따른 관련 하위법령의 규정 및 관련 서식을 신설

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 서식 일부개정(별지 제20호의2 서식)

서식 본문의 제출서류를 관련 법령에 의거 구체화

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기준의 인력기준 개정(별표2)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규제혁신과제로 호스피스전문기관
내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탄력적 인력배치가 가능하도록 현행
인력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완화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28조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2제4항”으로, “신청을”을 “이용 신청 또는 이용동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별지 제20호의2서식”을 “별지 제20호의3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호스피스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용신청서에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이용동의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④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호스피스대상환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서류를 받은 경우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그 내용

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호스피스사업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3(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래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 가능한 호스피스 병상 관련 정보
2. 호스피스 이용신청 후 대기 환자 관련 정보
3. 그 밖에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정보연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우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자료의 제공·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의사 또는 한의사: 호스피스 병동에 연평균 1일 입원한 환자 수를 20으로 나눈 수 이상의 전문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 2) 간호사: 호스피스 병동에 연평균 1일 입원한 환자 수를 2로 나눈 수 이상의 간호사(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 제20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0호의3서식(중전의 별지 제20호서식) 신청인 중 “말기환자등임”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말기환자등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제22조제3항, 제22조제5항, 제22조제4항, 제22조의2, 제22조의3, 별지 제20호의2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별지 제2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환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신청 전문기관 (병원)	호스피스전문기관명		

본인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및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호스피스전문기관 귀하

제출서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말기환자 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
------	--

유의사항

1. 이 신청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입니다.
2. 이 신청서는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환자가 직접 작성할 때에는 대리인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3.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환자가족(19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합니다) 중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환자는 언제든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호스피스 이용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서 및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등에게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고, 호스피스를 이용 신청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 등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말기환자등이나 그 가족이 질병의 상태에 대하여 알고자 할 때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이용동의서는 별지 제20호 서식과 같다.	제22조(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28조의2제4항에 따라 호스피스 이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용신청서에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 이용동의서는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호스피스대상환자가 호스피스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을 통하여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호스피스 이용 철회서와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2제4항-----이용신청 또는 이용동의를 ----- ----- ----- -----. -----별지 제20호의3서식----- ----- ----- -----.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신 설>

④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호스피스대상환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서류를 받은 경우 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⑤ ----- 제4항-----

-----.

제22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호스피스사업을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3(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

템의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래 각 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사용 가능한 호스피스 병상 관련 정보

2. 호스피스 이용신청 후 대기 환자 관련 정보

3. 그 밖에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정보연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우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센터, 권역별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자료의 제공·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